

■ 세명대학교 예비기술창업 지원자 예산지침(안)

\* 본 지침은 총 사업비 5천만원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사업비 변경시 본 편성비율에 의거 작성할 것

[단위: 원]

항목	세부항목	계상기준	현금		현물	편성비율	사업기준	비고	
			정부지원금	사업자부담	주관기관				
직접비	① 멘토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한 기술멘토링 비용</li> <li>총 20회 - 1백만원 (1회당 5만원)</li> </ul>	1,000,000			2%	-	멘토활동 사진증빙 및 멘토일지 첨부	
	② 창업교육 및 컨설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 개별창업 외부교육 - 1,000,000원</li> <li>선행기술조사 및 기업진단 및 교육 - 1,000,000원</li> </ul>	2,000,000			4%	5% 이내		
	③ 시제품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외주용역비</b></li> <li>- 창업자 본인이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</li> </ul>	-	-	-	최대 30%	80%	최대 30%	외주용역비 편성시 재료비 예산범위내 조정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재료비</b></li> <li>- 견본, 시약, 재료 구입비 및 시험 분석료 등</li> </ul>	25,000,000			50%		60%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기자재 구입비</b></li> </ul>		5,000,000		10%		10% 이상	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기자재 임차비</b></li> </ul>	-	-	10,000,000	20%			본교 기자재목록을 확인 후 사용기자재를 지정 사용계약서 작성
④ 기술정보 활동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장정보 획득, 도서 등 문헌 구입비 등</li> </ul>	1,000,000			2%	3% 이내			
⑤ 판로지원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항목</li> <li>가.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용</li> <li>나. 팸플릿 제작비용</li> <li>다. 전시회 참가비용(여비교통비를 제외한 순수 참가비)</li> </ul>	1,000,000			2%	20% 이내	온라인 쇼핑몰입점비 홈페이지 OR 쇼핑물 제작 가능		
간접비	사업운영경비 및 과제평가관리비		5,000,000	-	-	10%	10%	창업보육센터	
계			35,000,000	5,000,000	10,000,000	50,000,000			

※ 위의 예산편성은 본교 창업보육센터와 반드시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함.

**【공통 별표 3】**

**■ 예비기술창업사업 신청제외 대상 및 가점 목록**

**① 기술창업자 가점(최대 2점을 최종점수에 합산)**

- ▶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(0.5점)
  - \* 단, 권리권자에 한함(전용실시권 포함). 출원 제외
- ▶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지방청 시행대회 포함)(0.5점)
- ▶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(0.5점)
- ▶ 최근 2년 이내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(0.5점)
- ▶ 여성(0.5점)
- ▶ 장애인(0.5점)
- ▶ 최근 2년 이내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(0.5점)
- ▶ 최근 2년 이내 중소기업청 및 중앙정부지원 창업교육과정 이수자(0.5점)
- ▶ 팀으로 신청한 경우, 구성원 중 1인이 상기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가점 대상에 해당되고 동일 요건의 2인(건) 이상이라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.

**② 예비기술창업사업 신청제외 대상**

-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한다.
  - ▶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    - \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(국세,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)
  - ▶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  - ▶ 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(실험실창업 지원사업 포함) 및 아이디어상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(선정 후 중도 포기자 포함)
    - \* 그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
  - ▶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
  - ▶ [공통 별표 4]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
  - ▶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  - ▶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기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.
  - ▶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예비창업팀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
**【공통 별표 4】**

## 지원제외 대상 업종

\*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(영리사업자)을 지원대상 업종으로 하되, 아래 업종은 지원대상 제외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건설업	41~42	건설업
도매 및 소매업	451	자동차 판매업
	452中	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중 소매업
	45302	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
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331, 3	주류, 담배 중개업
운수업	47	소매업
	491, 2	철도 운송업, 육상 여객 운송업
	50中	수상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1中	항공운송업 중 여객운송업
	52914	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
52915	주차장 운영업	
숙박 및 음식점업	55~56	숙박 및 음식점업
정보서비스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임대업	6911	자동차 임대업
	692	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
	7151, 2	회사본부, 비금융 지주회사
수익업	731	수익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2	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
	753	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제외)
	759	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전시 및 행사대행업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제외)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
교육서비스업	85	교육서비스업(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(8565), 온라인 교육학원(85504)중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은 제외)
보건업	86	보건업
사회복지서비스업	87	사회복지 서비스업
예술,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	902	도서관,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
	91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	기타개인서비스업(산업용세탁업(96911)제외)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~98	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